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료법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장계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세계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 87,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 국회(20-2) 15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총342회) 전수조사

잡은 파행에다, 무더기 부실한-안전심의, 심사내용마저 보고서 기재생략

상임위 평균 출석률 83.89% - 여당 당대표의 국회(상임위) 무시심각(출석률 0%)

헌법도 국회법도 안 지키는 상임위원장과 간사들/후반기부터라도 법 준수 서약해야《서약서안 별첨》

-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 83.89% (지난해 85.83%)
- 정당대표들, 제19대 부터 6년간 재임기간<5개월 이상> 상임위 출석률 30%이하 5명
= 추미애(3.23%), 김한길(9.09%), 황우여(21.05%), 김무성(23.81%), 유승민(30%) =
- 국회법(49조의 2, 53조 등)준수하면, 연 74회 상임위 회의 가능(현재는 22.8회에 불과)
- 헌법(49조), 국회법(54조/109조)만 지켜도, 적체된 1만건의 민생 등의 법안처리 가능
- 당선횟수별 출석률 : 재선의원(87.69%) > 5선이상 의원(68.32%)
-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 : 더불어민주당(88.04%) > 자유한국당 (81.01%)

1.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문재인 정부 첫해(20-2)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총342회 활동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이나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사실상 최중요 의결단계인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 포함)가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결방식”으로 법안을 의결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적폐인 “100% 합의처리”를 고집하면서, 헌법(49조)/국회법(54조/109조)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생법안이든 무슨법안이든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몇 년씩 묶어두는(법안생매장) 악습으로 7월2일 현재 9.934개의 법안(10.066개 의안)이 적체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 국회(상임위/소위)의 놀라운 병폐는 전문가들까지 거의 모르고 있다>>

2.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및 출석률 조사결과

(1) 15개 상임위는 총342회 전체회의를 하였으며, 시간으로는 827시간 8분 회의를 하였고, 회의당 평균 약2시간 25분 6초 회의를 하였고, 평균 각 상임위별 22.8회 회의를 하였다.

- (2) 가장 많은 시간을 회의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36회, 95시간 43분 회의를 하였다. 운영, 여성가족 등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가장 적은 회의를 한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22회에 걸쳐서 44시간 4분 회의를 하였다.
- (3)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분석대상 282명의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3.89%이었으며,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41명이었다. 0%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외교통일위)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분포》

출석률분포	100%	90%대	80%대	70%대	60%대	60%미만	계
의원수(명)	41	79	74	41	26	21	282

3. 문재인 정부 첫 해(20-2) 상임위 활동 내용조사 결과(이하 5번항목에 상세부연)

- (1) 국무위원 임용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여야간 조율이 안되어 회의도 하기 전부터 파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회의 중 안전처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파행하는 경우가 **10건이나 확인**되었다.
- (2) 상임위 소관 법안처리에 있어 무더기 법안상정, 심사·의결하고 있었다.
- (3)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보고서의 기재 부실도 심각하였다. 환노위의 경우에 폐기 법안(18건)의 상임위 심사내용 “생략”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 (4)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국회 본회의 출석률보다도 저조하였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88.19%이었다.

4.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20-3) 상임위원회는 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54조/109조)이 정하고 있는 의사원칙을 잘 지켜서 적체되어 있는 9,943건의 법안을 살려 내므로써 국회의 제일 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헌법과 국회법 준수 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내용 목차》

5. 제19대 이후 6년간 정당 대표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빈약(30%이하 5명) …	3
6.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 전체회의 회의 현황(문제점) ……………	4
7.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 출석률 분석 ……………	12
[붙임]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법준수 위원장 및 간사 서약서(안) ……………	17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5. 정당대표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저조 : 19대부터 6년간 30% 이하가
무려 5명 / 정당대표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할것인지 의문**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해(20-2) 1년간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0%로 조사되어, 다른 국회의원을 견직하고 있는 정당 대표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조사해 본 결과, 역대 야·야당의 대표들의 출석률이 공히 매우 저조하여 실망스러웠다. 그럼에도 1년동안 출석률이 0%인 경우는 추미애의원 말고는 없었다.

19대와 20대 국회 6년간 원내교섭단체인 등록 정당의 대표를 역임(5개월 이내로 재임기간이 짧은 경우 제외)·재임 중인 당대표 12명을 조사해 본 결과, 출석률 30% 이하였던 당대표가 5명이나 되었다. 추미애 대표가 20대 국회 첫해 1번의 상임위원회 출석으로 3.23% 출석해서 출석률이 가장 저조했고, 김한길 대표가 9.09%로 두 번째로 나뉘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무성 대표 역시 각각 21.05%, 23.81%로 출석률이 저조하였으며, 제3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역시 30.0%로 저조하였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평균(20-2차년도 기준 83.89%)보다는 저조하였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제외하고는 7~80%대였다.

당대표를 외부인사로 뽑지 않고 국회의원 중에 선출한 이상, 정당의 대표도 국회의원 선서문에 나온 것처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국회법 제24조)”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충실히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국회 회의를 경시하여 불참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다.

《19대~20대 국회 6년간 정당 당대표의 재임기간중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현황》

정당 ¹⁾	대표	직함	재임기간	출석 일수	출석의무 일 ²⁾	상임위 출석률	비고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2012. 6.9.~2012.11.18. (5개월 9일)	11	17	64.71%	외교통상통일
	김한길	당대표	2013.5.4.~2014.7.31. (13개월 27일)	2	22	9.0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
	문재인	당대표	2015.2.8.~2016.1.27. (11개월 19일)	12	23	52.17%	국방
	추미애	당대표	2016.8.27.~ 현재 (22개월 4일)	1	31	3.23%	법제사법~외교통일
자유 한국당	황우여	대표최고 위원	2012.5.15.~2014.5.14. (24개월)	12	57	21.05%	교육문화체육관광

정당 ¹⁾	대표	직함	재임기간	출석 일수	출석의무 일 ²⁾	상임위 출석률	비고
	김무성	대표최고 위원	2014.7.14.~2016.4.14. (21개월)	10	42	23.8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 위원장	2016.6.29.~2016.12.5. (5개월 6일)	16	25	64.00%	국회운영과법제사법
	박지원	당대표	2017.1.15.~2017.5.10. (4개월)	8	10	80.00%	법제사법위원회
바른 미래당	유승민	당대표	2017.11.13.~2018.6.15. (7개월 2일)	3	10	30.00%	기획재정
민주 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2018.2.6.~현재 (5개월)	5	6	83.3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
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2012.10.21.~2013.07.21. (9개월)	6	8	75.00%	정무
	심상정	대표	2015.07.18.~2017.07.11. (24개월)	32	41	78.05%	환경노동와 정무
	이정미	대표	2017. 07.11. ~ 현재 (24개월)	14	21	66.67%	환경노동와여성가족

※ 1.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7. 7. 3.부터 11개월 당대표를 하였지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됨(**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2018. 6. 15. 취임후 한번도 회의가 없었음)
2. 추미애 의원은 재임기간 2차년도 17회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0%였고, 재임 1차년도에는 14번 중 1회 출석하였음.

6. 문재인 정부 첫해(20-2)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운영현황 (문제점)

(1) 폐회 중에도 주 2회 상임위 회의와 정례회의를 하도록 한 국회법(49조의 2, 53조)만 지켜도 적체법안(9,925건, 2018.6.30.기준) 처리가능

국회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리고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를 개최하는 도중이 아니면 연중 매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법(49조의 2)은 연간 의사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주 2회(월, 화) 월 8회 개최하여 연간 74회 정도 회의를 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주1회 연간 최소한 44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해(20-2) 회의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상임위원회는 평균 22.8회, 가장 많이 한 법제사법위원회도 36회에 불과하였다. 평균 기준의 30.8%정도 밖에 하지 않은 것이 된다.

1)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신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을 포함하였다.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을 포함하였다.
2) 재임기간 중 소속 상임위원회의 총 회의 횟수임

문재인 정부 첫해(20-2) 기간동안 전체 법안처리건수는 2,372건이므로, 현재 적체건수 9,925건(2018. 9. 30.기준)이므로 규정에 맞춰 3.24배 정도 횡수를 늘리면 7,698건을 처리할 수 있고 1회당 빈약한 회의시간(1회당 2시 25분)을 조금 더 하면 충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역시 44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으나, 회의를 많이 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보더라도 7.48회로 기준의 17%밖에 회의를 하는 데 불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가능 횡수 및 실제횡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차년도 실제회의
전체회의	8 ³⁾	8	5 ⁴⁾	8	5	8	8	0 ⁵⁾	8	8	8	8	74	22.8회
소위원회회의	4	4	4	4	4	4	4	0	4	4	4	4	44	7.48회 (법안심사소 위기준)

《참고》(1)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전문개정 2018.4.17.]

(2) 상임위원회 개최의 제한요소

1) 국정감사 실시시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물론 이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의 개최 : 개최시 원칙적으로 당일 상임위원회를 할 수 없으나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개최하는 것을 지킨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음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8.4.17.]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 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소위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3) 국회법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최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최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최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전문개정 2018.4.17.]

4) 국회법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5)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 전 30일 실시 규정을 지킬 경우

(2)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 처리해야할 법안 비해 회의시간 소극적 운영,
= 상임위 회의당 평균 2시간25분6초, 회의시간 평균 약 55시간8분30초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회의시간은 총 827시간 8분이었으며, 위원회별 평균 55시간 8분 30분였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세비를 준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세비는 평균 회의시간 55시간8분30초에 최저임금(7,530원)를 곱한 42만원 꼴이었다.

가장 길게 회의를 한 위원회는 95시간43분을 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이었다. 가장 짧게 한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22회, 44시간4분 회의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 전체회의 횟수 및 시간현황》

위원회	위원장 ⁶⁾	처리해야할 법안 (계류법안 ⁷⁾)	회의횟수	회의시간	1회당 평균 회의시간
국회운영위원회	김성태	269	17	25시간38분	1시간30분28초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934	36	95시간43분	2시간39분32초
정부위원회	김용태	729	21	64시간55분	3시간5분29초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772	22	45시간45분	2시간4분46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418	19	48시간48분	2시간34분7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871	22	73시간54분	3시간21분33초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130	17	55시간13분	3시간14분53초
국방위원회	김학용	196	23	56시간	2시간26분5초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	1,314	22	48시간27분	2시간12분8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478	28	59시간9분	2시간6분45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510	30	80시간44분	2시간41분28초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974	22	47시간18분	2시간9분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920	25	53시간29분	2시간8분22초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711	22	44시간4분	2시간11초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118	16	28시간1분	1시간45분4초
계		9,344	342	827시간8분	
평균			상임위당 회의수 22.8회		
			회의당 시간 2시간25분6초		
			1개 상임위 평균 약 55시간8분30초		

(3)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조정이 안 돼 파행 10건

상임위원회는 국회 파행으로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열린 상임위원회에

6) 위원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위원장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위원회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7) 2018. 6. 29. 현재 국회상임위원회 별로 배정된 계류건수로 전체 계류건수는 9,903건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8. 6. 29. 오후 4:16분 방문)

서도 안전조정에 실패하여 정회를 한 후 다시 열리지 않는 등 파행을 하였다.

회의록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10건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2018년 2월 23일 제356회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철 방남과 관련된 긴급현안 질의 문제로 파행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관련 파행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원회 중 회의가 파행된 경우》

위원회	국회회의	회의일자	파행사유
국회운영위원회	제356회 제2차	2018-02-23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 방향과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함. 민주당 의원들은 간사 간 협의되지 않았고, 회의는 예정된 안건만 처리해야 한다고 함. 여야 갈등으로 정회 및 속개를 반복하다가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였음.
	제356회 제3차	2018-02-27	긴급현안질의 관련,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불출석함. 정회했으나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법제사법위원회	제352회 제7차	2017-08-17	이유정후보자인사청문을위해서실시계획서가채택되어야하는데야당이반대로채택이어려움.회의를속개까지여야4당간사들이물밑접촉을할것을기대하고정회함,그러나계속개의되지않았음.
	제356회 제2차	2018-02-06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가진행중이던당시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권성동위원장이주재하는회의를참석하지못하겠다는뜻을민주당의원들이밝히고퇴장함으로서파행됨.
정무위원회	제351회 제2차	2017-06-0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간사 간 협의 위해서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52회 제2차	2017-07-0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 후보고서의 문안 정리가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 문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외교통일위원회	제356회 제2차	2018-02-22	심재권 위원장이 편파적인 발언을 함을 두고,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있었음. 정회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52회 제2차	2017-07-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 따라서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간사 간 협의 위해서 정회함. 그러나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제360회 제1차	2018-05-16	우리 상임위가 철저히 무력하게 배제되는 예산심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의시간 22분만에 산회함.
국토교통위원회	제356회 제3차	2018-02-22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함. 이에 대한 의결 들어가기 전에 간사 간 협의 위해서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4) 무더기 부실한 안전 심사 / 의결 여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논의를 한 일자별 안전수를 합해보면, 총 10,575건이었다. 이중 실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해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 **1585건 중 929건이 의결**되었다. 의결내용은 수정의결, 원안의결, 대안반영 폐기,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법률안 반려(3건) 등이었다.

상임위 상정안전건을 보면, 인사청문회나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한정되어 있는데, 법률안 심사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안전수는 계속 중복되나, 상정된 안전을 모두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어 계속 심사 중으로 표시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심사논의(상정된)된 안전수 현황》

위원회 회의록의 상정된 안전수 기준

상임위원회	회의수	상정(논의심사)된 안전수	1회 평균 안전수	상임위원회	회의수	상정(논의심사)된 안전수	1회 평균 안전수
국회운영위원회	17	257	15.12	행정안전위원회	22	1027	46.68
법제사법위원회	36	1585	44.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8	688	24.57
정무위원회	21	845	4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30	564	18.80
기획재정위원회	22	620	28.18	보건복지위원회	22	1239	56.3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9	419	22.05	환경노동위원회	25	750	3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2	640	29.09	국토교통위원회	22	1332	60.55
외교통일위원회	17	180	10.59	여성가족위원회	16	202	12.63
국방위원회	23	227	9.87	계	342	10,575	30.92

실제로 회의일자별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법안심사 의결을 한 회의횟수는 105회였고, 의결된 법안수(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 위원장 대안, 폐기 등)는 3,425건이었다. 이중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맡고 있으므로 타 상임위원회 중복을 감안하면 2차년도 처리된 법률안수(전체 2,372건)와 비슷하게 된다. 이중 하루에 50건이상 법률안을 의결처리한 횟수는 30회였다.

(4) 상임위원회의 폐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⁸⁾ 부실 : 국회법 제66조 위반 심사내용 파악이 어려움 (환노위 18개 폐기법안의 심사내용 “생략”)

문재인 정부 첫해(20-2)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고 폐

8)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전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기된 건수는 **모두 89건이었다.** 이 폐기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위원회별로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소위원회 심사내용이 생략되어 전혀 알 수 없거나,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아래는 폐기된 법안이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예시해 본 것이다. 관련 법안이 왜 폐기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단순히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는 ①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불부의(폐기) 이유는 철저하게 기록해서 남겨야 할 것이다.

《폐기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현황(위원회별 예시)》

위원회	폐기 법안수	심사보고서의 내용 중 소위 심사내용 예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법제사법 위원회	1	2007 77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 혜의원 등 11인)	2017. 07.04	2017. 12.08	폐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금태섭 의원)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6128호)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정무위원회	13	2009 4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재의원 등 10인)	2017. 09.15	2018. 05.23	폐기 (소위원장 : 이학영위원) 2018.1.17.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의 취 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개정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다만, 개정 내용을 법안에서 규율할 것인지 여부 는 국회가 선택할 문제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것 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획재정 위원회	17	2010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 찬의원 등 11인)	2017. 11.10	2018. 02.09	폐기 “소위원회 심사내용 : 생략” 으로 표기
외교통일 위원회	3	2010 1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호의원 등 11인)	2017. 11.10	2017. 12.16	폐기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국방 위원회	8	2005 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의원 등 10인)	2017. 01.23	2017. 09.08	폐기 (소위원장 경대수) 군인의 인사를 관리할 때 학력의 기재는 필요하고, 각 군은 진급 을 결정함에 있어서 출신학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급심사 자료 에는 학력 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음을 고

위원회	폐기 법안수	심사보고서의 내용 중 소위 심사내용 예시					소위 심사내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 위원회	1 8	2009 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 희의원 등 10인)	2017. 09.29	2017. 12.16	폐기	(소위원장 이만희)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2	2007 9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의원 등 14인)	2017. 07.14	2018. 02.05	폐기	(소위원장 : 손금주위원) 해당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동 개정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환경노동 위원회	18	2007 29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 련의원 등 10인)	2017. 06.09	2017. 11.30	폐기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국토교통 위원회	9	2008 77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 진의원 등 10인)	2017. 08.28	2018. 02.05	폐기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욱) 임시특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재 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취지, 재건축시 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참고 사례로, 문재인 정부 첫해(20-2)년도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또 상임
위원회 대안으로도 반영되지 않고 단순폐기된 법안수는 13건의 소득세법개정법률
안 등 89건이었다. 6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단순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단순폐기된 법안의 대표발의의원 현황》

단순폐기법안수	10건	4건	3건	2건	1건	계
의원수 (대표발의 의원)	1 (황주홍 의원)	1 (김종민 의원)	1 (노회찬 의원)	10 (생략)	52 (생략)	65 (생략)

(5)폐기된 법안에 대한 폐기이유는 대표발의 의원도 모르고 있었음

폐기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노동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내용을
알 수 없었다(전문위원의 의견을 원용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불부의(폐기) 이유를 알 수
있었으나,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는 본회의 불부의 이유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
다.

폐기된 법안이 있는 여러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폐기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회의를 하여 본회의 불부의(폐기)하기

로 결정했다을 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폐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주홍 의원의 폐기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보고서 분석내역》

의안번호	폐기법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심사보고서의 심사내용
201029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1028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1029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102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1029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1035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7.11.23	2018.03.1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1029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21	2018.04.07	폐기	“심사내용 생략” 으로 표시
200809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9	2017.12.16	폐기	(소위원장 : 김한표위원) 현행 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법 취지 반영하고 이 법은 폐기하도록 함
200356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4	2017.09.08	폐기	(소위원장 경대수) 법인의 합병 에서의 토지매수청구권 인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수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2005101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 정법률안	2017.01.13	2017.11.08	폐기	(소위원장 이만희) 지자체도 방 역교육 및 방역조치의무의 주 체이고 타 입법례에서도 비용 종류에 따라 부담비율을 유연 하게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7. 문재인 정부 첫째(20-2) 의원별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83.89%

(1)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총괄

문재인 정부 첫째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은 83.89%(지난해 85.83%)였다.
지난해보다 2%정도 하락하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60% 미만인 의원을 보면, 청가 등으로 회의에 한번도 출
석하지 못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하여 2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째(20-2)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60% 미만 의원(21명)》

의원명	선수	출석횟수	출석 의무횟수 ⁹⁾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선거구	정당
추미애	5선	0	17	0.00%	서울특별시 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조원진	3선	7	19	36.84%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대한애국당
서청원	8선	7	17	41.18%	경기도 화성시갑	자유한국당
최경환	4선	6	14	42.86%	경상북도 경산시	자유한국당
홍문표	3선	12	28	42.86%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자유한국당
유승민	4선	10	22	45.45%	대구광역시 동구을	바른미래당
강효상	초선	9	19	47.37%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이상민	4선	9	19	47.37%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김광림	3선	11	22	50.00%	경상북도 안동시	자유한국당
이언주	재선	13	25	52.00%	경기도 광명시을	바른미래당
하태경	재선	13	25	52.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바른미래당
이종걸	5선	12	23	52.17%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
홍문종	4선	9	17	52.94%	경기도 의정부시을	자유한국당
김재원	3선	12	22	54.55%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자유한국당
한선교	4선	12	22	54.55%	경기도 용인시병	자유한국당
조훈현	초선	14	25	56.00%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이우현	재선	9	16	56.25%	경기도 용인시갑	자유한국당
우원식	3선	27	46	58.70%	서울특별시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7선	13	22	59.09%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이혜훈	3선	13	22	59.09%	서울특별시 서초구갑	바른미래당
정동영	4선	13	22	59.09%	전라북도 전주시병	민주평화당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인 의원은 겨우 41명에 불과하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4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째(20-2)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의원(41명)》

의원명	선수	선거구	정당	상임위원회	성별
권성동	3선	강원도 강릉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	남
기동민	초선	서울특별시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남
김민기	재선	경기도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	남
김병욱	초선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	남
김성식	재선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바른미래당	기획재정	남
김성태	초선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남
김승희	초선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	여
김영호	초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	남
김종석	초선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정무위	남
김한정	초선	경기도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	남
박대출	재선	경상남도 진주시갑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남

9)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회의한 횟수를 의미하며, 사보임의 경우에는 사임위원회 회의수와 보임 위원회의 회의수를 더한 수치임(이하 같음)

의원명	선수	선거구	정당	상임위원회	성별
박성중	초선	서울특별시 서초구을	자유한국당	행정안전	남
박순자	3선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자유한국당	행정안전	여
박정	초선	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남
박주현	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기획재정	여
설훈	4선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남
송기현	초선	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남
신동근	초선	인천광역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	남
신상진	4선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남
심재권	3선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	남
안호영	초선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남
유동수	초선	인천광역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남
유성엽	3선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	남
유은혜	재선	경기도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	여
윤영석	재선	경상남도 양산시갑	자유한국당	외교통일	남
윤재옥	재선	대구광역시 달서구을	자유한국당	행정안전	남
이석현	6선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	남
이수혁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	남
이원욱	재선	경기도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남
인재근	재선	서울특별시 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여
장병완	3선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남
장정숙	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교육문화체육관광	여
전재수	초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	남
전해철	재선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정무	남
정양석	재선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자유한국당	외교통일	남
조경태	4선	부산광역시 사하구을	자유한국당	기획재정	남
조정식	4선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남
진선미	재선	서울특별시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	여
최운열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무	남
최인호	초선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남
한정애	재선	서울특별시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	여

(2)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높아(88.04%)

정당별로 분석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은 88.0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83.32%로 2위였으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82.74%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81.01%로 평균보다 2%p이상 저조하게 나와 상임위 출석이 부실했음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첫째(20-2) 정당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기타	평균/계
평균출석률	88.04%	81.01%	82.74%	83.32%	75.52%	83.89%
의원수	113	113	30	14	12	282

(3) 당선횟수별 재선의원 65명의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이 87.69% 가장 높아

당선횟수별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살펴본 바, 재선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87.69%(지난해 90.97%)로 가장 높았다. 초선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86.92%로 2위였으며, 3선의원은 81.11%, 4선의원은 75.35%로 점차 낮아졌으며, 5선 이상 15명의 평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은 68.32%로 전체의원 평균출석률보다 크게 저조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당선횟수별 전체회의 출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평균출석률	86.92%	87.69%	81.11%	75.37%	68.32%	83.89%
의원수	126	65	44	32	15	282

(4) 지역별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

최고는 전라남도출신 국회의원(88.94%)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88.9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88.12%였으며, 인천광역시 12명의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도 86.90%로 높았다.

반면, 1명의 의원이 세종특별자치도(59.09%)를 제외하고, 경상북도 12명의 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75.19%로 많이 저조하였다. 80%미만 지역은 대구광역시(75.74%), 대전광역시(78.08%), 울산광역시(78.15%)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순위》

선거구	의원수	평균출석률	선거구	의원수	평균출석률
전라남도	9	88.94%	충청북도	6	82.36%
제주특별자치도	3	88.12%	광주광역시	7	81.29%
인천광역시	12	86.90%	충청남도	9	81.09%
비례대표	47	86.76%	전라북도	10	80.61%
강원도	8	85.95%	울산광역시	5	78.15%
경기도	59	85.15%	대전광역시	7	78.08%
서울특별시	45	85.11%	대구광역시	11	75.74%
경상남도	15	84.45%	경상북도	12	75.19%
부산광역시	16	83.29%	세종특별자치시	1	59.09%
			계/평균	282	83.89%

서 약 서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상임위원장(상임 위 간사)으로서,

하나,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개원에 즈음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껏 직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법 제49조의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적극 개최하며, 53조의 폐회중 정례회의도 가능한 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제114조의 2에 따라 당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하나, 총돌 및 쟁점 의안에 대해서는 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54조, 제109조)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 신속하게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여러분께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상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 ○ ○ (印)

대한민국 국회 귀중